

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

한국교통안전공단 「인사규정」 상 채용결격여부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아래의 질문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후 회신해주시기 바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요구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※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※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판단

3-1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3-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3-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3-4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3-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3-6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지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※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(crimis.police.go.kr)에서 개인의 범죄, 수사경력을 본인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
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5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(이외 용도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원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(서명)